보험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2024. 3.

금 융 위 원 회

I. 감사실시 개요

□ 법적근거

- 민법 제37조* 및 비영리법인 설립·감독규칙(총리령) 제9조
 -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 ※ 보험연구원에 대한 직전 종합감사는 2021.4월에 실시
- □ 감사기간 : 2024.02.19.(월) ~ 02.23.(금), 5일(근무일 기준)
- □ **감사대상** : 고유사업, 예산·회계, 조직·인력, 임직원 복리,

내부통제 등 조직운영 전반

- □ 감사요원 : 감사담당관 외 6명(외부전문가* 1명 포함)
 - * 한국회계기준원 소속 회계전문가

□ 감사중점

- o 수행사업의 설립목적* 부합성
- * 보험관련 주요 제도 및 정책 조사연구, 보험상품 및 가격에 관한 연구, 국내·외 보험 및 금융산업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
- 예산집행·회계처리, 자금관리, 계약사무의 적정성
- 인력 및 조직관리 실태
- 임직원 보수·복리후생 지원의 적정성
- ㅇ 정관등 제규정 준수여부
- ㅇ 내부통제 실효성
- 종전 금융위 감사('21년)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2. 감사결과 지적사항

① 직원 대외활동 사전 승인절차 미준수

- □ 보험연구원은 직원의 대외활동에 대한 절차와 통제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직원의 대외활동 기준」제5조에 근거하여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 보험연구원 소속 직원들은 2021년 ~ 2023년 기간 동안 총 901건의 대외활동이 있었으며, 그 중 12건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절차가 이루어 지지 않거나 아예 승인을 득하지 않았음
- o 연도별 기준 2022년도 11건, 2023년도 1건이며, 유형별로는 회의 4건, 기고 8건, 그 중 대외활동 승인 미신청 건수는 기고 4건으로 확인됨

연번	유형	대외활동명	활동일자	승인일자	성명	복무처리
1	회의	간담회	2022.03.24.	2022.03.29.	***	출장
2	기고	기고	2022.03.	2022.04.25.	***	-
3	기고	기고	2022.04~05	2022.05.12.	***	-
4	회의	회의	2022.05.24.	2022.06.02.	***	출장
- 5	회의	위원회	2022.06.17.	2022.06.21.	***	출장
6	기고	기고	2022.08.09.	-	***	-
7	기고	기고	2022.09.20.	-	***	-
- 8	회의	간담회	2022.09.22.	2022.09.23.	***	출장
9	기고	기고	2022.09.30.	-	***	-
10	기고	기고	2022.11.21.	2022.11.30.	***	-
11	기고	기고	2022.12.29.	-	***	-
12	기고	기고	2023.11.13.	2023.12.13.	***	-

대외활동 사전 미슝인 현황 (2021-2023)

- 특히 2022년도 대외활동 사전 미승인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유형별로는 기고 유형에 대해서 대외활동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 보험연구원장은 직원이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전 직원에게 공지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복무관리에 유의할 필요 (주의 및 제도개선)

② 수행기사 등(촉탁직) 근무기록 관리 미흡

- □ 보험연구원은 「임시채용직원 운영기준」에 따라 연구 또는 기타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1년 또는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수행기사 등 촉탁직 직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수행기사 등 촉탁직 직원도 복무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음
- □ 보험연구원은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제 대상인 수행기사의 근무 내역을 별도 대장에 관리하지 않고 근무 종료시 차량 계기판 사진을 기획 행정실 관리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기록관리를 대체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음
- 또한 보험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3개년 차량운행일지와 연장·야간 ·휴일근무 산정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기입 사례가 발견되는 등 근무기록관리가 매우 미흡하였음
- i) 2022.8.13.(토)에 차량운행일지 상 수행기사가 사용자로 기록되어 있으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음
- ii) 2022.8.26.(토)에 수당은 지급되었으나 차량운행일지에는 운행기록이 없으며, 이날 차량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어서 일지에 기록은 하지 않았으나 출근한 사실이 있어서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함
- iii)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사전요구자료 휴무일 차량운행일지 내역에는 2021.3.20.(토) 및 2021.3.27.(토)에 원장이 사용자로 기록되었으나, 차량 운행일지에는 차량 관리자인 수행기사들을 사용자로 기재하고 수당은 실제 운행한 수행기사에게 지급함

차량운행 관련 제출자료 비교·대조

	날짜	시간	날짜	시간	일자 사용자		일자(요일)		사용자	사용목적
	3/20	3시간	3/27	4시간	2021.3.20	A B	2021.3.20	토	원장	제주금융포럼 참석
	(토)		(토) 41건	2021.3.27	A B	2021.3.27	토	원장	보험회사 대표 자녀결혼식참석	
	대상자: A									
연장·야간·휴일 근무산정			차량운행일지1) 휴무일 :		차량운행일	일지 내역2)				

출처 : 각 제출자료 편집

^{1) &#}x27;차량운행일지 -원장차량-, 보험연구원 제출자료 발췌

^{2) &#}x27;2024년도 종합감사 사전 제출자료(추가) 5번_휴무일 차량운행일지 내역' 발췌

iv)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근거한 주 52시간 근무제 이행을 위해 공항 이동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일에는 통상적으로 원장이 직접 운행 하였음에도 차량운행일지에는 차량 관리자인 수행기사가 사용한 것 으로 잘못 기재하여 관리

차량운행일지상 수행기사 근무일수3)

(단위:일)

			(- · · - /
연도	2021	2022	2023
근무일수	313	258	189

출처 : 보험연구원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차량운행일지 참고

⇒ 보험연구원장은 수행기사 등 촉탁직원의 체계적 근무기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차량운행일지 등 오기입 및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시정)

③ 직원의 대외활동 시 인사위원회 승인 지연

- □ 보험연구원 「직원의 대외활동기준」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겸임교수와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함
- 인사위원회는 '21년~'23년 기간중 '대외활동 신청자 승인 심의' 안건을 5건(동일인 2건) 심의하였으며, 이 중 1건은 대외활동 시작일('21.11.3.) 이후에 안건을 심의('21.11.4., 제12차)하여 신청자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외활동을 하였음

대외활동 심의지연 내역

성 명	소 속	직 급	활동기관	활동구분	안건심의	신청기간
С	××연구실	연구위원	▲▲대학교	겸임교수	′21.11.4.	2021.11.3.~2021.12.8. (매주 수요일, 10시~13시)

* 2021.11.1. 입사자로 입사전부터 진행해 온 강의

⇒ 보험연구원 원장은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대외활동기준 등 자체 규정을 철저히 안내하고, 향후 임직원들이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 없이 대외활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주의)

- □ 보험연구원은 급여규정 제6장(퇴직금)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평균임금을 월단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근로기준법」제2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조, 제4조, 제8조에 따를 경우, 소속 직원들에게 퇴직금 산정·지급 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퇴직금을 산정해야함
 - * 1일 평균임금(고용노동부) 산정: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일수
- □ 또한, 보험연구원은 전직원에 대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DC형')를 운용하면서 별도의 규약(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을 두고 있으나 이를 급여규정에 명시하여야 함에도, 급여규정 제6장 퇴직금에서는 회사가 DC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이나 별도의 규약을 두고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 보험연구원 원장은 퇴직금 산정에 사용되는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 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점과 퇴직연금 지급방식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규약에 따른다는 점을 보험연구원「급여규정」에 명시할 필요 (시정)

⑤ 카드포인트 수입 누락 및 회계별 법인카드 혼용해 사용

1) 카드포인트 수입 누락

- □ 보험연구원 「회계규정」 제23조에 따르면 수익은 실현주의에 의한다고 하고, 동 규정 제24조에서는 비용과 수익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은 직접 상계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지계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 실제 회계연도 내에 일체의 수입과 비용이 완전히 계상되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는 예산의 일반원칙으로 통용되고 있음

³⁾ 차량운행일지에 기록된 수행기사의 이름이 적힌 일자 개수로 파악한 것이라 실제 근무일수와 차이가 있음

- □ 현재 보험연구원은 5구좌(고유목적사업 3구좌, 수익사업 2구좌)와 연동하여 50개의 법인카드를 사용 중4이며, 사용에 따라 카드포인트를 적립하고 있음
- 재무회계 개념상 수익이 경영활동 등의 결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금유입액5)을 의미한다면 카드포인트는 수익으로 볼 수 있으며, 보험 연구원 「회계규정」 내 규정된 계정과목상 금액적으로 소액이고 별도의 계정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어 사업외수익 중 잡이익으로 평가됨
- □ 종합감사 전 보험연구원에서 제출한 2024년도 종합감사 사전제출자료 (추가)에 따르면 법인카드 포인트를 '잡이익'처리하였다고 기재함

'법인카드 포인트' 관련 보험연구원 제출자료



○ 실제 확인 결과, '24.1.5일 기준 카드포인트는 1,706,368원이 적립되어 있었으며, 보험연구원에서 제출한 최근 3년치 결산보고서 내 '잡이익 명세서'에는 이러한 카드포인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추가로 제출한 대체전표에 2019회계연도 중 법인카드 사용포인트를 잡이익으로 상계한 내역을 확인함

2) 회계별 법인카드 혼용해 사용

- □ 보험연구원 「회계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경영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용과 수익을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분류하고 모든 수익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은 정확히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이 또한 예산의 일반원칙으로 예산의 편성과 관리에 있어 내용과 체계 및 형식 등을 통일성있게 운용하여 계통적으로 종합·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예산 통일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임

업무추진비(고유목적사업)를 수익사업 용도 카드로 결제한 내역 일부

카드번호	날짜	사용금액	사용자
****-***-7828	20211108	319,000	D
****-***-5847	20220410	335,600	E
--5847	20220430	532,500	E
****-***-5847	20220514	570,000	E
****-***-5847	20220529	342,750	E
****-***-5847	20220609	563,000	E

출처: '2024년도 종합감사 사전제출자료' 별첨 32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발췌

기타 고유목적사업을 수익사업 용도 카드로 결제한 내역 일부

카드번호	날짜	사용금액	구매물품
****-***-5847	20210303	993,000	퇴직선물
--5847	20210429	2,987,000	퇴직선물
--6886	20220831	2,000,000	상품권
--4809	20220831	1,400,000	상품권
--7828	20221216	3,000,000	단체복
--7828	20221216	142,000	단체복
--3883	20221216	2,096,000	단체복

출처: '2024년도 종합감사 사전제출자료' 별첨 31 01 법인카드 사용내역(국민카드) 발췌

보험연구원 내 수익사업 용도 카드내역

카드사	카드번호	사업구분
국민	***-***-9840	수익
국민	****-***-7828	수익
국민	***-***-7810	수익
국민	****-***-4809	수익
국민	****-***-3883	수익
국민	***-***-3891	수익
국민	****-***-5847	수익
국민	****-***-6886	수익
국민	****-****-0813	수익

* 볼드체는 고유목적사업의 일부를 결제한 카드

- 각 회계연도 '계정별 원장'을 확인한 결과, 고유목적사업 과목의 지출 금액을 수익사업 원장에 기재하지 않고, 지출한 당월에 고유사업 과목 에서 수익사업 결제계좌로 입금처리하여 정산함
 - * 법인카드 개수와 카드별 한도 제한으로 큰 금액의 결제가 필요할 때 여러 카드를 사용해왔다고 소명
- ⇒ 보험연구원 원장은 회계연도 내 발생한 카드포인트는 수지계산서 상 잡이익으로 계상하여 처리하고, 예산의 체계 및 통일성 있는 운용을 위해 회계별 법인카드 사용 등 자체 방안을 강구할 필요 (제도개선)

^{4) 2024}년도 종합감사 사전제출자료 30번, 34번 참고, '보험연구원

⁵⁾ 재무회계개념체계,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2019.9.27.

⑥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 업무 관련성 여부 모호

- □ 보험연구원은 「정관」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면서「업무추진비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각종 업무추진상 소요되는 접대경비 및 이와 유사한 부대비용인 업무추진비의 사용방법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대외 경조금 역시 업무추진비 사용범위에 포함하여 사용구분 및 금액을 규정하고 대외 경조금으로 지출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있음
- □ 이에 '21년~'23년 경조사 신청서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일부 지급 내역은 업무추진 연관성이 낮거나 모호함에도 지급한 사례가 파악됨
- ⇒ 보험연구원 원장은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업무 관련자에 국한될 수 있도록 업무관련성 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영할 필요 (제도개선)

⑦ 임차보증금의 계정 재분류

- □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은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8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에 의거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 지출 결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 금융위원회는 소관 비영리법인이 제출하여야 할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 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한국회계기준원의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가 포함된다는 점을 고지한 바 있음
- □ 한국회계기준원의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15조(투자자산)에 따르면 투자 자산이란 장기적인 투자 등과 같은 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하며, 투자유가증권, 장기대여금 등이 포함됨
- 보험연구원의 회계규정상 재무상태표 계정과목에 임차보증금은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음

계정과목(재무상태표)

계정과목	과목해설					
(1)투자자산						
4. 임차보증금	건물, 토지, 기계 등의 임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자에게 예탁하는 보증금					

□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18조(기타비유동자산)에 따르면 임차보증금은 명시적으로 기타비유동자산에 포함되며, 보험연구원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한국화재보험협회)에 대한 보증금도 투자활동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이라고 볼 수 없어 기타비유동자산으로 판단됨

⇒ 보험연구원 원장은 '21년~'23년 중 재무상태표에 투자자산으로 분류한 임차보증금을 기타비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하고, 회계규정상 재무상태표 계정과목의 분류도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일관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제도개선)

⑧ 위탁연구용역 계약체결방식 부적정

- □ 보험연구원은 회계규정 제58조(계약의 방법) 및 계약업무처리기준 제3조 (계약의 방법)에 따라 조사연구비 비목의 위탁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 보험연구원은 '21.3월~'23.12월말까지 조사연구비 중 1천만원 이상 용역의 계약건수가 27건으로 제한경쟁계약(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건을 제외하고 25건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음
- □ 위의 용역 현황 중 "○○○ 운영방안 연구" *용역 과제는 22년 제44차 ('22.12.19) 연구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보험계리법인 중 일반손해보험 보험 계리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보험계리법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의계약 체결로 심의하였으나.
 - * ◆◆◆◆◆◆◆◆◆◆◆○로부터 수탁('22.11.25~'23.7.22)받은 128,700,000원중 30,000,000원 재위탁
 - 보험연구원 연구관리위원회 검토자료에서 국내 대형 보험계리법인은
 4개사로 ▲▲보험계리(주)도 임원급 기준 일반손해보험 계리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 보험연구원 연구관리위원회를 통해 「○○○ 운영방안 연구」용역 과제에 대해 위탁여부, 위탁자 선정 등 위탁계약 여부를 수의계약 대상으로 심의한 사항은 회계규정 제58조(계약의 방법) 제①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등 경쟁의 방식으로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이라고 판단됨
- ⇒ 보험연구원 원장은 연구관리위원회를 통해 위탁연구용역 심의시 계약의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부서(기획행정실)에서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 (주의 및 제도개선)

⑨ 무형자산 인식기준 개선 필요

- □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은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에 의거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 지출 결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 금융위원회는 소관 비영리법인이 제출하여야 할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 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한국회계기준원의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가 포함된다는 점을 고지한 바 있음
- □ 한국회계기준원의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17조(무형자산)에 따르면 '무형 자산'이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없는 비화폐성 자산'이며, 무형자산에는 '컴퓨터소프트웨어'가 포함됨
- □ 보험연구원의 '무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회계연도별로 일관되지 않은 회계처리와 재무상태표 작성기준에 맞지 않은 회계처리가 확인됨
- 2023년 'STATA 라이선스 비용, V3 백신 프로그램, Oracle 갱신' 등 컴퓨터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전액 비용(전산비 등)으로 인식하였으나, 2022년까지 해당 항목 중 일부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경우도 존재하며,

- 무형자산은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12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에 따라 특정 항목이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더라도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내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함이 적절하지 않으며, 명확한 기준에 따라 무형자산 인식여부*를 결정한 후 인식한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적절한 내용연수와 유동·비유동 분류를 수행 하도록 해야함
- * 계약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 비유동자산인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잔여계약기간, 금액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비용 또는 선급비용 등으로 적절하게 회계처리를 수행 필요
- ※ '14년 보험연구원 자체 감사에서 무형자산 취득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 하였으나,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
- ⇒ 보험연구원 원장은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구입을 위해 지출할 때, 무형자산의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여 프로그램 갱신 등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회계처리에 신중할 필요 (제도개선)

⑩ 위탁연구용역의 적기 수행을 위해 내부기준 보완 필요

- □ 보험연구원은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5조에 따라 계약의 적정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하여야 하며, 위탁연구용역의 경우 「연구용역 수탁 및 위탁 업무처리기준」에 별지 용역계약서 제6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o 이에 '21.3월~'23.12월까지 1천만원 이상 위탁연구용역계약 29건중 계약을 변경한 건은 총 5건(동일용역건 2건)으로 코로나 상황, 학사일정, 취업제한대상 파악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을 변경하였음
- 이중 「△△△에 관한 연구」용역의 연구관리위원회 제7차 안건자료에 따르면 1차 계약 변경시 "해외출장(일본)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기간연장과 상관없이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대안 모색후 과제를 수행할수 있도록 2개월을 연장심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3차 안건에서 동일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2개월 추가 연장*
- * 용역 수행기간 내에 결과물을 완성하지 않으면 지연일수 1일당 지체상금(2.5/1,000) 부과

'21년도 연구관리위원회 위탁연구용역 변경(연기) 안건

□ 당초 계약기간 : 2020.12.29.~2021.4.28.(4개월)

	• • • •	
구분	'21년 3월 11일 7차 안건(1차 변경)	21년 5월 25일 13차 안건(2차 변경)
변경계약	2020.12.29.~2021.6.28.(2개월 연장)	2020.12.29.~2021.8.28.(추가 2개월 연장)
변경사유	코로나 사태로 인한 현지 방문 등의 곤란한 상황에 대한 대안 모색	코로나 사태로 인한 현지 방문 등의 곤란한 상황에 대한 대안 모색
회의내용	연구자의 소명내용을 고려해 볼 때 위탁연구 용역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해 보이나, 연구자 가 고려하고 있는 해외출장(일본출장)은 코로 나19 상황으로 볼 때 기간 연장과 상관없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연구자의 소명내용을 볼 때 위탁연구용역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해 보임
회의결과	부의된 내용과 같이 계약기간을 2개월 연장하 기로 하고 세부 세미나 개최일과 보고서 제출 일자를 연구자의 요청과 같이 조정	부의된 내용과 같이 계약기간을 2개월 연장하 기로 하고 세부 세미나 개최일과 보고서 제출 일자를 연구자의 요청과 같이 조정
세미나 및 보고서 제출	2021.5.24. 및 2021.6.14	2021.7.24. 및 2021.8.14

⇒ 보험연구원 원장은 위탁연구용역 계약기간의 연장변경 시 「연구용역수탁 및 위탁 업무처리기준」을 보완하여 연구용역의 진행상황 및 연구방향을 적기에 파악하고 불필요하게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일 없이 계약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제도개선)

① 표절율 점검 관련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2021년 금융위원회	의 보험연구원	에 대한 정기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보험연구원은 표절	검사시스템(Copy	/ killer)를 구입(2022	2.2.1.)하여 사용중이며
연구부정행위 방지	를 위해 2022년	계획과제 발간물부	부터 연구윤리위원회를
강화하여 운영이리	는 조치내역을	회신(2022.1.10.)한	바 있음

보험연구원은	「연구윤리기	린 에 의거	연구부정행위	방지와 '	연구윤리	확립
관련 제반사항	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	¹ 윤리위원회'틀	를 설치·	운영중임	

또한,	연구결과의	평가	및 긴	·행물	출판	등	연구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관리규·	정」에	따라	'연구	관리위	원회	l'를 구성하여	i 운영하	고 있음

□ 「연구윤리기준」에 따라 설치된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방지와 연구윤리 확립 관련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바, 연구 결과물의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 보험연구원에서는 현재 연구 결과물에 대한 표절 점검을 연구윤리 위원회가 아닌 「연구관리규정」에 따라 설치된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음

연구윤리위원회와 연구관리위원회 비교

	연구윤리위원회	연구관리위원회
근거	연구윤리기준 제8조	연구관리규정 제26조
목적	연구부정행위 방지와 연구윤리 확립 관련 제반사항 심의	연구결과의 평가 및 간행물 출판 등 연구 과제의 효율적인 관리
구성	(위원장) 연구조정실장 연구관리위원회 위원(※ 원장 제외)	(위원장) 원장 (부위원장) 연구조정실장 8인 내외의 위원(※ 원장 승인 필요)
심의· 의결 사항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연구윤리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기타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	●사업계획상 계획연구과제의 추진 결과물에 대한 보고서 유형 결정 및 평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진된 연구결과물에 대한 보고서 유형 결정 ●각 부서장이 의뢰하거나 ISBN 부착예정인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 다만, 단순통계자료는 제외 ●이 규정 또는 다른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기타 보고서의 발간 및 평가등과 관련하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집	®원장 지시,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성 인정시, ®2인 이상 위원의 요구	위원장(원장) 요청시
의결	재적과반수 출석, 출석 2/3이상 찬성	재적과반수 출석, 출석 2/3이상 찬성
기타	비공개 원칙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직무 중 일부를 부위원장에게 위임 가능

⇒ 보험연구원 원장은 「연구윤리기준」에 근거하여 표절률 점검은 연구 윤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등 연구윤리위원회 기능을 규정에 맞게 운영함이 타당함 (제도개선)